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8가단5036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,729,900원과 그중 36,207,271원에 대하여 2008. 4. 25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남인수

별지